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781

발의연월일: 2025. 4. 14.

발 의 자 : 윤준병 • 박용갑 • 정동영

박희승 • 박민규 • 서영교

이성윤ㆍ허 영ㆍ문대림

김동아 · 조계원 · 송옥주

이병진 · 신영대 · 김우영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의 한정된 근로감독관 인력으로 는 모든 사업장을 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어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근로감독이 이루어지는 실정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해당 지역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의 여력이 있어도 현행법상 근로감독의 권한이 없어 직접적으로 관리할 수없는 상황임.

이에 사업장에 대한 실효적인 근로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로 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에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근로감독관을 두도록 하고, 근로감독관은 지방고용노동청, 지방고용노동청 지청 및 출장소, 그리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977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 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 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 중 "지방고용노동청 지청 및 그 출장소에"를 "지방고용 노동청 지청 및 그 출장소,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시·광역 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 제6조의2(근로감독관 등) ① (생 | 제6조의2(근로감독관 등) ① (현 | | |
| 략) | 행과 같음) | | |
| ② 지방고용노동청, <u>지방고용노</u> | ② <u>지방고용노</u> | | |
| 동청 지청 및 그 출장소에 근 | 동청 지청 및 그 출장소, 고용 | | |
| 무하며 근로감독, 노사협력, 산 |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시 | | |
| 업안전, 근로여성 보호 등의 업 | <u>·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u> | | |
| 무에 종사하는 8급・9급의 국 | <u>별자치도에</u> | | |
| 가공무원 중 그 소속 관서의 | | | |
| 장의 추천에 의하여 그 근무지 | | | |
| 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 | | | |
| 이 지명한 자는 제1항의 범죄 | | | |
| 에 관하여 사법경찰리의 직무 | | | |
| 를 수행한다. | | |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